

『전기통신사업법』 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불법행위를 통신사에 면죄부 기능 우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해야

발행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담당 | 심현덕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차례	2
요약	3
I.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4
II. 동의의결제 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9
1. 동의의결제도	9
2. 현행 동의의결제	9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동의의결제	10
4.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	11
III.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13

-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작성됐음.
- 동의의결제
 -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의 문제점
 - 2013. 5.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2013. 12.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2015. 8. 마이크로소프트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그리고 최근인 2016. 4.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동의의결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여연대는 2016년 4월에 있었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적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함.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에게 당해 행위의 위법행위 판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면죄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을 결정함.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도입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I.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6년 6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것과 과징금 감경,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불법정보 유통 방지,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 등이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정 이유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구제가 될 수 없어 이용자 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여 동의의결제 도입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임의적 감경 사유 추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1) 동의의결제 신설(안 제52조의3 신설)

법 위반 여부를 조사·심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통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함

- 2) 과징금 감경(안 제32조제3항, 제53조제3항제5호·제6호 신설)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감경 사유 규정에 현행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외에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이용자 보호 활동’을 추가하여 과징금 감경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

- 3)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안 제104조제5항 단서 신설)

- 4) 불법정보 유통 방지(안 제22조의5,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 5)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 산·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신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현행과 같음) 15.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 등을 말한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유통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32조(이용자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평가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평가결과를 활용하게 하거나 이 법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기준·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신설>

——. 다만,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동의의결) ① 제5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또는 이용자이익 침해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또는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사업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내용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제재에 상응하고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② (생략)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④ ~ ⑧ (생략)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생략)

② ~ ⑤ (생략)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⑥ 전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제3항에 따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⑨ 동의의결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6. 이용자 보호 활동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_____

_____.

1. _____

_____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 5까지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_____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9.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 ~ 12.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 략)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4의4. ~ 17. (생 략) ⑥ (생 략)	_____. 1. ~ 8. (현행과 같음) 9. ~~제32조제4항~~ _____ _____ 10. ~ 12.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 _____ _____.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차단하지 아니한 자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32조제3항~~ _____ _____ 4의4.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

이하에서는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에서 동의의결제 신설(안 제52조의3)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의견을 제시한다.

II. 동의를결제 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1. 동의를결제도

동의를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든 관련되는 사건의 진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행정부의 입장에서든 불필요한 조사인력을 절약하여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¹

2. 현행 동의를결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51조의2(동의를결)를 신설하여 2011. 12. 2.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뒤로 표시광고법 제7조의2(동의를결)를 2014. 1. 28. 신설하여 시행 중에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의2(동의를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71조(고발)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를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를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1 최승재, “동의를결제 입법이후 적용사례로 본 입법상 보완필요성” 2015. 1. 13., 인권과 정의 122쪽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를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표시광고법>

제7조의2(동의를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를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오인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를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를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동의를결제

제52조의3(동의를결) ① 제5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또는 이용자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동의를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또는 동의를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사업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내용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제재에 상응하고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를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전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제3항에 따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⑨ 동의의결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 12. 새로이 도입한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성과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동일한 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특별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한 사건은 총 4건으로 2013. 5.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2013. 12.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2015. 8. 마이크로소프트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그리고 최근인 2016. 4.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동의의결이 있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 단 4건 만이 동의의결로 다루어지게 되었고 그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유사한 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대로 도입하는 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 공정위는 2016년 3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SKT·KT·LGU+ 통신3사의 특정 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에 의한 동의의결 제도를 최초 활용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월 26일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잠정 동의의결안은 통신사업자들의 불법행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소비자 피해구제 내용임을 비판하며 공정위에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²⁾>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에 대하여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첫 사례로 동의의결을 개시하여 적용한 것이다.
- 공정위의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LTE 데이터 무제한 상품의 속도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으로 최대 2GB의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는 데이터 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사실상 아무런 보상책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쿠폰의 가격을 1GB당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통신사가 내놓고 있는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적게는 1GB당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문자 초과 사용에 따른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는 환불 조치 않고 쿠폰 제공을 하겠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피해자들에게 사용 요금 환불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공정위가 발표한 법 위반 우려 사항으로 지정한 데이터 속도 제한, 부가영상통화 과금, 문자 과금 뿐만 아니라 데이터로밍, 테더링에도 과장광고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통신사의 과장광고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여 충분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적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동의의결제의 적용 결과에 대한 평가 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동의의결제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 3) 동의의결제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당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게 되므로 사업자에게는 위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³ 또한 사업자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법행위 판정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나중에 위법행위 결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법 위반행위가 충분히 입증된 후, 예상되는 손해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을 합의해결로 종결할 경우에는 사업자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4) 이용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안이 동의의결에서 시정방안의 요건이라고 본다면 해당 손해배상안의 적정성 여부도 동의의결의 적법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적정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2조의3 제8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및 제55조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2조의3 제8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피해구제가 어렵게 될 것이다.

2 2016.04.2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29z2Sk4> 에서 전문 확인 가능

3 박성용,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제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2014. 8월 127쪽

III.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을 하고자 한다면 2011. 12.부터 현재까지의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법행위 판정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약화될 우려와 위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동의의결의 손해배상 안에 대한 적정성을 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 한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동의의결제도로 인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구제를 효율적인 방안과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정책자료

『전기통신사업법』 동의를결제도 신설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행일 2016. 7. 22.

발행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담당 심현덕 간사 02-723-5303 min@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